서울특별시 저충주거지 잡수리 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 381

2019. 2. 28 도시계획관리위원회

I . 심사경과

1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. 1. 31. 이상훈 의원

2. 회부일자 : 2019. 2. 7

3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2019. 2. 28. 상정·의결)

Ⅱ. 제안설명의 요지 (이상훈 의원)

1. 제안이유

○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사업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성능개선구역을 신규 도입하고, 집수리 지원의 대상범위와 규모를 주택성능개선구역 내외로 구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주택성능개선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을 정함(안 제2조 및 제6조).
- 주택성능개선구역 내/외 지역에 대해 행·재정적 지원범위를 정함 (안 제7조).
- 집수리 공사비용의 보조 및 융자 범위를 정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첨(비용추계서)

다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Ⅲ. 검토보고 요지 (조정래 수석전문위원)

□ 제출배경

○ 이 개정조례안은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'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'을 신규 도입하고, 집수리 지원범위를 확대 및 명확히 하여 집수리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이상훈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2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됨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

첫째, 집수리사업 지원 대상지역 및 지원내용 확대(안 제2조, 제6조, 제7조)

○ 서울시(도시재생실)는 현재 집수리 사업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(근린재생일 반형)내에서 시행하는 "서울가꿈주택 사업"과 "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지 원" 사업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음. "서울가꿈주택 사업"은 「도시 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1)과 관련 조례²⁾에 따라 도시재

^{1) 「}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(보조 또는 융자)
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^{1.}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

^{2.}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· 연구비

^{3.}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

생활성화지역내 건축물의 개·보수 및 정비,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며(별첨 1), "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지원" 사업은 「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실행계획」(행정2부시장 방침 제347호, '15.10.13)과 이 조례³⁾('16. 1.제정·시행)에 따라 일반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융자 및 이차보전해 주는 사업임.

구 분	가꿈주택사업	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사업		
대상지역	도시재생활성화지역(근린재생일반형)내 2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	도시재생활성화지역,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,일반 저층주거지역내 저층주택이 밀집한 주거지		
사업내용	개별주택 집수리(대수선, 수선, 건축물 성능개선공사 등), 기반시설 정비 등			
지원사항	보조, 기반시설정비(시설비) - 해당 공사비의 50%이내, 최대 1천만원(내부 300만원까지)	융자 또는 일정범위내 이자지원		

^{4.} 전문가 파견·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

- 9.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
- 10.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·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
- 11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2)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3조(재정지원)

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, 범위 및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②~④ (생략)

- 3) 제6조(집수리 지원사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.
 - 1. 집수리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축 · 운영
- 2.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
- 3. 저층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및 운영
- 4.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
- 5. 그 밖에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

^{5.}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· 정비 ·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

^{6.}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

^{7.}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

^{8.} 마을기업,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

이 개정조례안은 집수리 사업 지원 대상을, 현행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이외에도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'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'(이하 "지원구역")으로 확대하려는 것임. 지원구역은 금번 새로이 도입하는 제도로서 △도시재생활성화지역 △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, 건축물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60% 이상으로서, △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△정비구역 해제지역 △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△골목길재생지역 가운데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등을 말하는 것으로,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근거의 명확화로 집수리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였음.

여기서, '골목길재생지역'을 지원구역 지정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금 번 회기에 우리위원회에 상정·심의 예정인 「서울특별시 골목길재 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(의안번호 396)」과 연계하여 골목 길 재생지역에서 골목길 정비와 집수리 사업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.

구분	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	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지역
대상 지역	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*) 건축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% 이상으로서 다음 지역 중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골목길재생지역 자치구청장이 요청하는 구역 	일반 저층주거지
비용지원 사항	공사비 보조 및 융자기반시설비용 지원	- 공사비 융자 또는 이차보전

^{*)}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·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

- 공사비 지원(안 제7조)과 관련하여 지원구역과 그 외 지역을 구분하여 지원내용을 달리 정하고 있는 바, 지원구역 안에서는 집수리 비용보조 및 융자와 기반시설비용 지원을, 그 외 지역에서는 융자 또는이차보전만 가능하도록 차별화한 것은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지역과 경관지구와 고도지구 등 건축제한으로 정비사업에 한계가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·강화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의효과 제고 및 사업의 확산,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그 목적이었다 사료됨.

둘째, 공사비 지원범위 확대(안 제9조)

- 현행 조례는 공사비의 80%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공사비 지원 비율을 정하고 있으나,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원구역에만 지원 가능한 공사비 보조 범위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정하고(안제7조), 지원의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음.
-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의 확대는 필요하다 사료되며,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담당부서별로 별도 추진하는 집수리 사업과 골목길재생관련 사업 지원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겠음. 또한, 추후 지원금의 한도, 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단됨.

<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>

	도시재생사업구역 (저리 융자)				일반 저충주거지역 (이자 지원)					
구분	집수리			신축		집수리			신축	
. –	단독	다가구	다세대	단독	다가구	단독	다가구	다세대	단독	다가구
한도	6천만	3천만 (최대 4호)	3천만 (세대당)	1억	5천만 (최대 4호)	ll .	3천만 (최대 4호) , 뉴타운 ⁹ 금액의 1	의 경우	- 1억	5천만 (최대 2호)
금리	연 0.7%)	시중금리 ((市, 금리:	의 2.0%보	 조)	
상환	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					5년	면 균등분혁	할상환		
조건	융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									

(출처: 주거환경개선과 내부자료)

셋째,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(안 제11조)

-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(이하 "재생센터") 등에서 집수리 공구대여 등 집 수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나, 집수리 사업 지원대상과 지원범위가 확 대됨에 따라, 집수리 지원센터(중앙 및 지역 센터)를 별도로 설치·운영 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집수리 지원서비스 제공 및 사업의 통합 관리, 마을단위 주택 진단과 상담 등 패키지 지원, 현장기술 지원 등 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됨.
- 다만, 현재 재생센터에서 집수리 지원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만큼, 기존 재생센터를 활용하는 방법, 기존의 재생센터와 중복되지 않는 공간설치 등 다각적인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, 추후 집수리센터의 기능과역할,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 . **토론요지** : 없음

Ⅵ. 심사결과 : 수정 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Ⅷ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 안 **관련** 번호 381

제안일자: 2019. 02. 28 제 안 자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안 제2조제6호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'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' 대상 중 "도시재생활성화지역"과 "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"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 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안 제 6조제2항으로 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2조제6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대상을 안 제6조제2항으로 하여 조무체계를 정비함
-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함(안 제6조제1항).

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구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"을 "구역을"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.

안 제6조 부분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
 - 가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
 - 나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(이하 "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"이라 한다)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구역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	제2조(정의)	제2조(정의)
사용하는 용어의 뜻은		
다음과 같다.		
1. ~ 5. (생략)	1.~ 5. (현행과 같음)	1.~ 5. (현행과 같음)
<u>〈신 설〉</u>	6. "주택성능개선지원	6
	<u>구역"이란 집수리 활</u>	
	<u>성화를 위해 제6조에</u>	
	<u>따라 지정된 구역과</u>	<u>구역을</u>
	다음 각 호에 해당하	
	는 구역을 말한다.	
	가. 「도시재생 활성	<u>〈삭 제〉</u>
	화 및 지원에 관한	
	특별법」 제20조 및	
	같은법 시행령 제28	
	조에 따라 고시된 도	
	<u>시재생활성화지역</u>	
	나. 「도시 및 주거환	<u>〈삭 제〉</u>
	경정비법」 제23조	
	제1항제1호에 따른	
	<u>방법으로 시행하는</u>	
	<u>주거환경개선사업</u>	

(이하 "관리형 주거 환경개선사업"이라 한다)으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지 정·고시된 구역

〈신 설〉 제6조(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지정) 시장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 층주택이 60%이상으로 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구역을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<u>거쳐</u>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 다.

> 1. 관리형 주거환경개 1. ~ 5. (개정안과 같 선사업이 예정된 구역 음) 2.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

제6조(주택성능개선지원
구역 지정) ①

된 정비구역

- 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
- 4. 시장이 골목길재생 지역 등 집수리활성화 를 위해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지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5. 자치구청장이 주택 성능개선지원구역 지 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요청하는 구역

〈신 설〉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은 시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
 - 1. 「도시재생 활성

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 시된 도시재생활성 <u>화지역</u> 2. 「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」 제2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<u>주거환경개선사업</u> (이하 "관리형 주거 환경개선사업"이라 한다)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 정·고시된 구역_

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"를 "서울특별시"로 한다.

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"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"이란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서울특별시"를 "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"로 한다.

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,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) ① 시장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

된 저층주택이 60%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「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- 1.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정된 구역
- 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 구역
- 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
- 4. 시장이 골목길재생지역 등 집수리활성화를 위해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
- 5. 자치구청장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구역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은 도시 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 정된 것으로 본다.
 - 1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
 - 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(이하 "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"이라 한 다)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구역

제7조(종전 제6조)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집수리 지원사업)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시장은 다음 각

호의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외 지역에서의 재정적 지원은 융자에 한 한다.

제9조(종전 제8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공사비용 지원 비율)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집수리 공사비를 보조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, 융자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용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원범위 안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11조(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시장은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</u> (이하 "시"라 한다)내 저층주거지 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집수리 를 활성화하고, 관련 집수리업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<u>서울특별시</u>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~ 5. (생 략) <u>〈신 설〉</u>	제2조(정의)
제4조(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<u>서울특별시</u>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	제4조(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) ①
<u>〈신 설〉</u>	제6조(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) ① 시장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%이상으로서 다음 각

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있다.

- 1.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정된 구역
- 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정비구역
- 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경관지구 및 고도 지구
- 4. 시장이 골목길재생지역 등 집 수리활성화를 위해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구역
- 5. 자치구청장이 주택성능개선지 원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요청하는 구역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은 도시재생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

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축 및 운영)

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 로 본다.

1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 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
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(이하 "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 업"이라 한다)으로 같은 법 제16 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구역

제6조(집수리 지원사업) 시장은 다 제7조(집수리 지원사업) 주택성능 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 개선지원구역에서 시장은 다음 각 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 호의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 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외 지역 에서의 재정적 지원은 융자에 한한 다.

1. ~ 5. (현행과 같음) 제7조(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 제8조(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 축 및 운영)

제8조(공사비용 지원) 시장은 저층 제9조(공사비용 지원 비율) ① 시

주거지 거주민에게 집수리에 소요 되는 공사비용을 공사비용의 80 퍼센트 범위 안에서 융자로 지원 할 수 있다.

장은 제7조에 따라 집수리 공사 비를 보조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고, 융자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사 비용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 워함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원범 위 안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 원할 수 있다.

제9조(저층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) 제1()조(저층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) 〈신 설〉 제11조(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시장은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 치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집수 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등을 지원 할 수 있다.

제10조(우수 집수리업체 지원) 제11조(재원)

제12조(우수 집수리업체 지원)

제1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

제1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

제13조(재원)